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3.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, 통재구역설정,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전등을 심의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

- 방위지원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 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대공침투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함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공포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부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(안)